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옥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24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2월 06일

발 의 자: 김영옥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곽향기, 김규남,
김동욱, 김용호, 김원중,
김춘곤, 남창진, 박영한,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원형, 이효원,
최진혁, 황철규 의원(17
명)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함
-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활동장려사업의 범위에 장기간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화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 신체활동 홍보·캠페인을 보장하고, 신체활동장려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로 하고 “활성화” 용어를 “장려”로 수정함(안 제2조 ~ 안 제14조)
- 나.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사업의 추진을 규정함(안 제8조)
- 다. 신체활동장려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라.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를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규와의 관계)”를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체활동 활성화사업”을 “신체활동장려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 될”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체활동 활성화 종합”을 “신체활동장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시민 신체활동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신체활동장려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체활동 활성화”를 “신체활동장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각각 “신체활동장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신체활동 활성화”를 “신체활동장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연도별 신체활동활성화실행계획 수립)”을 “(연도별 신체활동장려 실행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체활동활성화실행계획”을 “신체활동장려 실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신체활동장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체활동활성화사업”을 “신체활동장려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신체활동장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활성화하기”를 “장려하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신체활동장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신체활동 활성화사업”을 “신체활동장려사업”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신체활동증진 위원회의 구성 등)”을 “(신체활동장려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체활동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 증진 위원회”를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신체활동장려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신체활동 활성화”를 각각 “신체활동장려”로 하고, 같은 조 하단에 위치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3조로 하며,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신체활동장려사업)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신체활동 홍보 및 캠페인
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사업

3.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

4. 신체활동장려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자치구, 관련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 각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등과 같은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을“(신체활동장려사업 지원단)”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각각 “신체활동장려사업”으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9조) 중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신체활동장려사업”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을“(신체활동장려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중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신체활동장려사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신체활동 장려 사업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u></p>	<p><u>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u>‘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 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그 밖의 신체활동 및 건강증진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사업을 포함한다.</u></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3조(<u>다른 법규와의 관계</u>)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u>신체활동 활성화사업</u>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p>	<p>제3조(<u>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u>) ----- <u>신체활동장려사업</u>----- ----- -----.</p>
<p>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p>	<p>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 -----</p>

다)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

2. 3. (생략)

② (생략)

제5조(시민 신체활동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생략)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인력관리 및 소요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
할 -----

-.

1. -----
신체활동장려 -----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신체활동장려 기본계획 수립 등) ① -----
신체활동장려 -----

-----.

② -----
-----.

1. 신체활동장려사업-----

2. (현행과 같음)

3. 신체활동장려사업-----

4. ----- 신체활동장려-----

③ (생략)

제6조(연도별 신체활동활성화실
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
초로 하여 연도별 신체활동활성
화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
략 및 목표 수립
2. (생략)
3. 신체활동활성화사업의 연간
운영계획, 기관의 임무, 연도
별 목표 및 성과지표
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관련
조사·연구
5.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의 인식개선, 교육, 홍보
등 환경조성
6.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위
한 시설의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7. 신체활동 활성화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운영

8.·9. (생략)

제7조(신체활동증진 위원회의 구
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신체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연도별 신체활동장려 실행
계획 수립) ① -----

----- 신체활동장려 실행계
획-----
-----.

② -----
-----.

1. 신체활동장려사업-----

2. (현행과 같음)
3. 신체활동장려사업-----

4. 신체활동장려사업 -----

5. ----- 장려하기 -----

6. 신체활동장려사업-----

7. 신체활동장려사업-----

8.·9. (현행과 같음)

제7조(신체활동장려위원회의 구
성 등) ① ----- 신체활

활동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및 변경

2. (생략)

3.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생략)

<신설>

<신설>

동장려를 위하여 신체활동장려위원회-----

-----.

② -----.

1. 신체활동장려 -----

2. (현행과 같음)

3. 신체활동장려-----

4. ----- 신체활동장려-----

③ (현행 하단의 제2항과 같음)

제8조(신체활동장려사업)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신체활동 홍보 및 캠페인

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사업

3.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

4. 신체활동장려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제

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자치구, 관련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 각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도구 및 건강관리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등과 같은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

단) ① 시장은 위원회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사전검토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을 둘 수 있다.

제10조(신체활동장려사업 지원

단) ① -----

----- 신
체활동장려사업 -----
-----.

②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생략)

제11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우수사례 시상 등)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

② 신체활동장려사업 -----

-----.

제11조(수당 등) 신체활동장려사업 -----

-----.

제13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삭 제>

제12조(신체활동장려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① -----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원활한 수행-----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우수사례 시상 등) -----
신체활동장려사업-----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